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1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925,200,000	27,756,000
일 반 회 계	909,600,000	27,288,000
일 반 회 계	909,600,000	27,288,000
특 별 회 계	15,600,000	468,000
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1,347,000	40,410
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	940,000	28,200
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사 업 특 별 회 계	4,007,000	120,210
기 반 시 설 사 업 특 별 회 계	35,000	1,050
주 차 장 특 별 회 계	9,271,000	278,1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069,828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539,107천원, 목적예비비 2,530,721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